#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채현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6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채현일·윤종군·박홍배

박상혁 · 강득구 · 전재수

복기왕 • 한병도 • 김남근

모경종 • 정성호 • 김우영

곽상언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한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지원 등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현재의 재난관리체제는 인공지능기술 등 새로운 기술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계가 이미 도입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이에 현행법의 피난유도 범위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 발생위치 및 확산 상황을 감지하여 안전한 피난경로와 대피요령을 안내하

는 가변식 대피안내로 확대하는 한편, 국가 등으로 하여금 피난유도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(안 법률 제2027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 및 제14조). 법률 제 호

##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27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피난시설의 설치 및 피난유도(재난 발생 위치 및 확산 상황을 감지하여 안전한 피난경로와 대피요령을 안내하는 가변식 대피안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계획

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했 정 아 혅 개 법률 제20274호 초고층 및 법률 제2027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거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(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) 제7조(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) ① 사전재난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피난시설의 설치 및 피난유 4. 피난시설의 설치 및 피난유 도계획 도(재난 발생 위치 및 확산 상황을 감지하여 안전한 피 난경로와 대피요령을 안내하 는 가변식 대피안내를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계획 5. ~ 10. (생략) 5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② (생 략) 제14조(교육 및 훈련) ①・② (생 제14조(교육 및 훈련) ①・② (현 략) 행과 같음) <신 설>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 · 훈련을 실

	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
	<u>수 있다.</u>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